

신청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공 통 서 류 *필수	■ 보상금 지급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 병적증명서	
해당할 경 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장
	■ 재직증명서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피상속인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 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서류 양식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입금

재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 (2020.11.27.) 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021.12.29.)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설물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됩니다.

시설종류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 설	교 육 및 의료시설	공 공 시 설
제1종 구역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허가		
제2종 구역	제한 없음		
제3종 구역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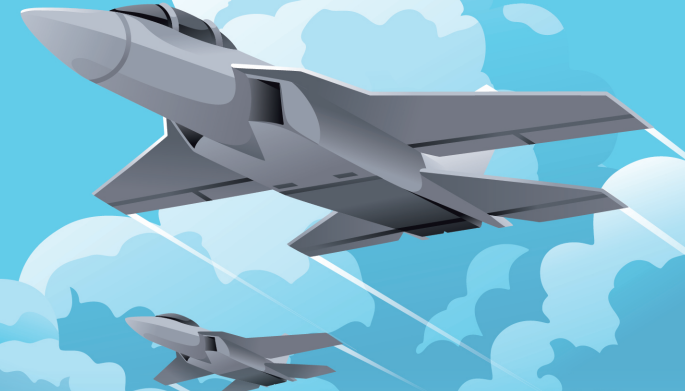
보상대상 조회

• kmnoise.samwooanc.com(크롬접속 권장)

문의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532~6534)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예천군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이 2019.11.26. 제정되어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군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외국인, 사망자, 전출자 포함
- 최초보상대상기간 : 2020.11.27. ~ 2021.12.31.
2020.11.27.(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이자(5%) 가산하여 지급

보상기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구 분	소음기준	월 보상금	비 고
소음 대책 지역	제1종	95이상	6만원
	제2종	90이상~95미만	4만 5천원
	제3종	80이상~90미만	3만원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감액조건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단,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함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단,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 감액 적용함
- 군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일수 제외

감액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예천비행장 설치 시기 : 1976년 8월 1일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지급절차



신청기간 : 2022. 2. 3. ~ 2. 28.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신청방법

- 보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읍면별 접수처 방문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가능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 선임 가능